

자료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국내언론관계판결
외국언론관계판결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법제관련문헌

P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당사자의 신원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자신이 개설한 안티사이트 폐쇄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다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12서울중재15
 신청인 : 남○○
 피신청인 : (주)연합뉴스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결정일 : 2012. 5. 22.
 처리결과 : 중재결정 (추후보도)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모 출판사에 대한 안티사이트를 개설하여 허위비방하면서 사이트 폐쇄를 조건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조정기일 심리 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담은 추후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 결정했다.

■ 중재대상보도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3일자)

내용 : 기업체의 안티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사이트 폐쇄를 조건으로 돈을 뜯으려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 출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다가 작년 9월 '사이트를 폐쇄할테니 3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남모(55, 부동산중개업)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또 작년 9월~11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모 정수기 안티사이트 등 6~7개 사이트에 가명으로 접속해 “편법 유통회사들이 구직자나 부녀자를 등쳐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경찰에서 “몇 년 전 한 다단계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본 일이 있어 앙심을 품고 안티사이트를 운동을 벌이다가 협박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연합뉴스에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추후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

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추후보도문〉

1. 제목 : “안티사이트 운영자 남모씨 무죄확정”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04년 2월 3일자에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라는 제목으로 마포경찰서가 J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의 폐쇄를 미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남모씨(62 택시운전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금년 3월 29일자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과 남씨의 끈질긴 노력으로 J모 출판사는 지난 2007. 3. 30.자로 폐업하였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조차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중재결정 (추후보도)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1]의 보도문을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한다.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같게 한다.

2. 위1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중재대상기사(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의 하단부에도 [별지 1]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며, 피신청인이 중재대상 기사를 데이터베이스(DB)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1]

〈보도문〉

가. 제목 : 안티사이트 운영 남모씨 8년만에 무죄 밝혀져

나. 본문 : 지난 2004년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만들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던 남모씨(62. 택시운전자)가 8년여 만인 지난 3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씨는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무죄를 입증 받아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추후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전문 알바를 고용하여 인터넷 여론전을
주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971 정정청구

신청인 : 남○○

피신청인 : (주)씨비에스아이 (노컷뉴스)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결정일 : 2012. 7. 2.

처리결과 : 기각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의사들이 전문 알바들을 고용하여 포괄수가제에 관한 인터넷과 SNS 여론전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실과 다른 해당보도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기사와 연관성이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노컷뉴스 : (1) 「애 낳을 때 무통주사 없다더라...」 괴담에 임신부 좌불안석」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내 용 : 복지부 “민영보험 의존도 낮추는 제도일 뿐”... 전문 알바 고용 여론 주도 의심

7월 이후 출산을 하게 되는 임신부들은 요즘 고민이 많고 헛갈린다.

7월부터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 확대 적용되면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맞는 무통주사를 못 맞는다라는 소문 때문이다.

실제로 임신,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제왕절개 분만때 무통주사를 맞지 못한다는 글이 임신부들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아이디 “****”를 쓰는 한 회원은 “7월부터는 (제왕절개분만)수가가 29만원대로 떨어지고 29만원안에 무통 유착방지제 다 사용해야되요... 그럼 타산 안맞으니 실밥 재료는 싸질거고 거즈 및 수술할 때 사용되는 소모품들도 다 싸 재질 쓸거고...”라며 무통주사가 포괄수가제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했다.

“****” 회원은 게시판내 다른 글에도 종횡무진으로 댓글을 달며 7월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안됐던 무통(주사)을 급여로 전환되는 데 이렇게 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확신에 차 말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가 더 좋다고 하던데... 정보를 알아봐야겠네요”라는 글이 이어졌고, 그 뒤에 “전면적 포괄수가제는 무통이 불법으로 분류되어서 의사가 무통주사 뇌줄 수가 없어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통주사는 지금도 비급여 항목이고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에도 비급여 항목이다. 임신부가 선택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다.

임신부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페 특성상 무통주사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무통주사 못 맞는다라는 글이 마치 사실 정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임신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 등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맹장 수술 때 흉터가 남지 않는 복강경 수술을 병원에서 하지 못한다는 글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시술할 경우에는 개복수술에 비해 40~50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수술할 때 200원짜리 싸구려 실(봉합사)을 쓸 것이라는 글도 읽는 이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병원 등은 1천원짜리 실을 쓰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은 지금도 200원짜리 봉합사를 쓰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포괄수가제가 민영의료보험의 전단계라든가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하락해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글들도 SNS 공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비급여대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될 수 있어’라는 논리다. 하지만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이라며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 남은경 의료정책팀장도 “의료 민영화 얘기 해서 MB공격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포괄수가제는 민간보험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이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보고 있다. 물증은 없지만 내심 의사들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10~20여명 가량의 ‘전문 알바’들이 고용돼 인터넷과 SNS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의사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0일자)

내 용 :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비를 개별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지급하지 않고, 특정 질환에 관련된 진료 행위들을 하

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액수만 지불하는 제도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 방지와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과소진료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로, 오히려 포괄수가제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란 외중에 의사협회 등이 포괄수가제 저지 수단으로 ‘수술 거부’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사과 및 정정보도의 제목과 내용은 최초 기사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정보도문>

1. 제 목 : “애 낳을 때 무통주사 없다더라” 기사 및 “의사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기사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

2. 내 용 : 가. 2012년 6월 18일 본지는 “애 낳을 때 무통주사 없다더라” 제하의 기사에서, 의사들이 10~20여명의 전문 알바들을 고용해서 인터넷과 SNS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 추측성 보도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간 참여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였으며, 불공정하게 어느 한 집단을 매도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의 해당부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에게 사과를 드리며, 상기 기사의 해당부분은 오보였음을 알립니다.

나. 2012년 6월 20일 본지는 “의사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제하의 기사에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에 의해 의사선생님들에게 생명의 위협과 공포감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기사 및 포함된 동영상의 내용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에게 사과를 드리며, 해당기사 및 해당 동영상은 자체 삭제하였음을 알립니다.

■ 사건 처리결과 : 기각

<결정내용>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2년 6월 18일자 [애 낳을 때 무통주사 없다더라... 괴담에 임신부 좌불안석] 제목의 기사에서, 의사들이 10~20여명 가량의 ‘전문 알바’들을 고용하여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산모들이 무통주사를 못 맞게 된다는 등의 인터넷과 SNS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6월 20일자 [“의사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하여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를 보고 조심하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의

료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 구체적으로 그 동일성을 알 수 있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을 직접 언급한 바 없고,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인턴사원으로 일했던 증권사가 인턴 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제보를 했다고 잘못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986 · 987, 988 · 989 (병합)

각 조정 · 손해청구

신청인 : 사○○

피신청인 : (주)조선일보, (주)디지틀조선일보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결정일 : 2012. 7. 10.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및 1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교보증권이 인턴사

원에게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영업 압박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며 인턴사원이던 신청인이 채용에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실을 외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교보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원 끌어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A10면)

내용 : 정규직 채용은 절반도 안해

금감원 “실태 조사 뒤 문책”

교보증권이 대학생 인턴사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영업 실적을 올릴 것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높은 실적을 올린 인턴만 채용하겠다고 영업을 강요해 2,600억원대의 주식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전체 인턴의 절반 미만의 인원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턴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해 1 · 2차에 걸쳐 112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이들은 3,529개 증권계좌에 2,689억원의 주식 투자대금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선발한 인턴의 42%인 47명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들은 취업을 위해 무리하게 가족 · 친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인턴 한 사람당 적게는 10억원 안팎을, 많게는 60억~70억원 정도를 끌어왔고, 회사 측은 인턴 개인의 실적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턴들의 영업으로 개설한 계좌에서는 50억원이 넘는 투자 손실이 생겼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사원이 일임매매(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지 증권사에 맡기는 것)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자격증 없이 일임매매를 하면서 고객 정보를 다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교보증권이 영업실적이 전체 1등이었던 A씨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끌어들인 고객이 손해를 보자 자비로 손실을 보전해줬는데, 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 A씨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 회사가 인터넷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금감원은 조사가 끝나면 교보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임원 문책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정규직 채용은 절반도 안해”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목 : ‘A씨 불만을 품고 외부에 제보를 했다’는 문구는 기자의 개인적 소견일 뿐,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져 (‘교보증권, 인터넷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원 끌어와’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 A10면에 ‘교보증권, 인터넷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영업실적 1위를 했던 A가 채용에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외부에 사실을 알렸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손○○ 기자 본인의 추측을 마치 공식적인 금감원 보도자료인 것처럼 내보낸 것으

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및 100만원)

<결정내용>

1. 피신청인1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선일보> 2면에 [별지1-1]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정규직 채용은 절반도 안해)활자 및 크기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2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선닷컴>(www.chosun.com)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2]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2]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교보증권, 인터넷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원 끌어와) 하단에도 [별지1-2]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3. 피신청인들은 위 1항 및 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2년 7월 31일까지 1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지1-1]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교보증권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조선일보는 6월 28일자 10면 「교보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교보증권이 영업실적 1등이었던 인턴사원 A씨를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는 채용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1-2]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교보증권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조선닷컴은 6월 28일자 사회면 「교보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교보증권이 영업실적 1등이었던 인턴사원 A씨를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는 채용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펜션 관련 보도에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펜션을 자료화면으로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1021 · 1022, 1023 · 1024 (병합)

각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 채○○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주)아이엠비씨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결정일 : 2012. 7. 26.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기사삭제 및 2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펜션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전경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은 해당 보도와 무관하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자료화면을 대체하거나 삭제하고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MBC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비자 등친 펜션 · 렌터카 · ‘꼼수 할인’ 적발” (2012년 6월 28일 20:55)

내 용 : [앵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인 펜션과 렌터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기자] 권 모씨는 지난 6일 가족여행을 위해 경기도의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펜션 측

은 위약금으로 숙박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권 모씨] “자기들 규정에는 7일 전에 취소해도 50%고 4일 전에 취소해도 50%고...”

[기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성수기 팬 열흘 전에 예약하면 숙박요금을 100% 환불해 줘야하고, 7일 전에는 90%, 3일 전에는 50%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을 어기고 숙박요금의 40%까지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영업중인 렌터카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5개 업체들은 과도한 요금을 정상요금인 것처럼 신고한 뒤 이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허위표시...”

[기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5백만 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를 반납할 때 차를 빌릴 때보다 더 높은 기름값을 정산해주지 않는 업체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입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소비자 등친 펜션’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8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소비자 등친 펜션”이란 제목하

에 소비자에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펜션과 예약·취소·환불 규정을 어기고 위약금을 물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5개 펜션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과 전혀 무관하고 분쟁이 없는 경기도 청평소재 캐슬레이크펜션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잘못 방영하여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기사삭제 및 200만원)

<결정내용>

1. 피신청인 2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시된 조정대상 보도 화면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나온 부분을 다른 자료화면으로 대체 또는 삭제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 2,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모 협회의 음악적 재능 기부에 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 및 성명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충북조정31, 32 (병합) 각 손배청구
 신청인 : 임○○
 피신청인 : (주)충청리뷰사, (주)충북인뉴스
 중재부 : 충북중재부
 종결일 : 2012. 7.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1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협회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음악적 재능 기부를 한다고 보도하면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신청인을 피아노 앞에 앉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실명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을 찍는 이유를 몰랐으며 동의 없이 촬영하고 실명과 함께 보도하여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충청리뷰 · 충청인뉴스 : 「꿈과 열정 있는 아이들 모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내용 : 청주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단체 나도람 재능 있는 저소득가정 아이 오디션 선발 임○○ 총괄기획실장 기업체후원 바람

‘꿈과 열정이 있는 아이들 모두 모여라’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단체 나도람은 말 그대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음악인들이 모여 올해 1월 창립총회를 가졌다. 앞으로 미술인들의 참

여도 확대해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단체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바로 이 나도람이 지난 3월 출범식에 이어 4월 오리엔테이션까지 가졌다.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 32명의 신청서를 받은 뒤 청주를 6대 권역으로 나눠 5~7명씩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 꿈과 열정,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피아노, 성악, 현악기(바이올린 · 첼로), 관악기(플루트)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멘토로 선정되는 꿈나무는 앞으로 멘토로부터 무료로 지도를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 가경동의 한 학원을 찾았을 때에도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레슨 오디션을 받기 위해 초중학생 5명이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은 재능기부단체 나도람을 총괄기획한 임○○(임○○ 피아노 학원장) 실장이 피아노 레슨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100만원)

〈합의내용〉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2년 7월 31일까지 각 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임직원들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국가 안위 등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엠바고 요청을 받지 않은 기자라도 보도를 유예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엠바고란 ‘취재원(정보 제공자)과 취재기자들 사이에 특정사안에 대한 보도를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신사협정’으로 정의되는데, 취재원의 엠바고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요청을 받은 취재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달리 국가기관 등 취재원이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취재기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거나 일부 취재기자들이 엠바고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 나머지 취재기자들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등 엠바고의 준수를 강제하는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에 있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엠바고 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거나, 다른 취재기자들이 취재원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음을 알게 된 경우 당연히 그에 따라 관련 내용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도하려는 내용이 국가 안위나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대한민국 국민

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한 경위 및 엠바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엠바고 요청을 받은 취재기자들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경위 및 취지, 당해 사안이 보도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도하려는 특정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사안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헌법상 보장되는 취재의 자유는 기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권력기관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자유권일 뿐, 나아가 취재원에게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행정기관이 기자실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취재원이 취재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점, 언론사가 엠바고를 파기할 경우 기자실 출입정지,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의 제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실 출입기자의 등록 및 출입제한, 보도자료 제공의 대상 및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점 자체만으로 이 사건 각 조치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원고 등 언론사에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운영하는 기자실 출입 및 보도자료의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 결

사건 : 2011가합3841 손해배상(기)

원고 :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전○○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박○○, 이○○

변론종결 : 2012. 5. 30.

판결선고 : 2012.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위

1) 대한민국 국민이 승선한 1,500톤급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주얼리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2011. 1. 15. 인도양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에서 소말리아 국적의 해적들에게 납치되자, 대한민국 해군은 2011. 1. 18. 인질로 잡힌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해상작전(이하 '이 사건 제1차 작전'이라 한다)을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해군 3명이 부상을 입은 채 이 사건 제1차 작전은 실패하였다.

2) 국방부는 이 사건 제1차 작전 전날인 2011. 1. 17.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을 수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는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이하 '엠바고(news embargo)'라 한다)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제1차 작전 다음날인 2011. 1. 19. 위 출입기자단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다.

3) 부산·경남 지역에서 일간신문 '부산일보'를 발행하는 원고 소속 기자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설명 및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2011. 1. 20. 08:30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진행경과를 제보받고, 국회,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함과 아울러 같은 날 09:30경 청와대 대변인 김○○에게 문자메시지로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및 우리 해군 부상'이라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여 달

라고 요청하여 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국방부에서 엠바고 걸고 상세 백(back) 브리핑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4) 원고 소속 기자 이○○, 박○○, 권○○은 2011. 1. 20. 오전경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해군 3명 부상’이라는 대제목과 ‘피랍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중’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기사를 같은 일자 ‘부산일보’ 제1면에 게재함과 아울러 ‘부산일보’의 인터넷 사이트(www.busan.com)에도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5) 국방부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 20. 11:20경 원고 소속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인질범들에게 알려질 경우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들의 신변에 위험이 초래되고 추후 작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소속 기자들은 그 무렵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였다.

6) 대한민국 해군은 2011. 1. 21. 다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해상작전(이하 ‘이 사건 제2차 작전’이라 한다)을 시도하여 인질 전원을 구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문 발송 및 각 조치

1) 국방부는 2011. 1. 21. 이 사건 제2차 작전이 성공한 후 국무총리실, 각급 중앙행정기관 등에 ‘삼호주얼리호 사건 관련 업무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호주얼리호 사건 관련 업무협조 요청】

2. 국방부 대변인실은 삼호주얼리호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일간지 등 출입기자단과 주요포털사를 대상으로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엠바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부분 언론과 포털사가 성숙한 자세로 이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3. 다만, 아래와 같이 인질구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정부의 정당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해당 매체는 공익을 위한다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어긋난바, 범정부차원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나. 제재사유

1) 부산일보 : 본 사건의 경우 인질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기사화 전 취재 내용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할 경우 포괄적 엠바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인터넷 및 석간으로 보도(1. 20.)

다. 제재방안

- 1) 해당 언론사출입기자 기자실 출입제한 조치
- 2) 사전 보도자료 제공중지 등

2)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1. 1. 24. 원고에게 ‘부산일보, 엠바고 파기에 대한 징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소속 청와대 출입기자인 박○○에 대하여 30일간 출입정지의 징계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국무총리실과 문화관광부도 각 언론담당자를 통하여 같은 날 원고 소속 각 출입기자에게 1개월간 출입정지 조치를 한다고 구두로 통보하는 등 그 무렵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각급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청와대 등’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소속 각 출입기자들에 대한 1개월간 출입정지 및 보도자료 제공중지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소속 기자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를 요청받은 바 없었음에도, 국방부는 이 사건 공문에서 마치 원고 소속 기자들이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 사건 공문을 각급 행정기관 등에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2) 청와대 등의 이 사건 각 조치는, 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엠바고를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② 출입기자실 출입 및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취재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임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며, ③ 엠바고 파기에 따른 징계는 해당 출입처의 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등 해당 출입처가 직접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④ 엠바고를 요청한 국방부 외의 다른 행정기관까지도 나서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 청와대 등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고 유사 사안에서 엠바고 준수를 강조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가 내부적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발송한 이 사건 공문을 기사화하여 대외적으로 보도한 것은 오히려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공문의 기사화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조치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 요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기한 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정당하며, 엠바고 위반에 관한 제재 관행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언론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온 기사실 출입, 보도자료 제공을 일정기간 정지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국방부의 이 사건 공문이 원고의 명예·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원고의 엠바고 위반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문 제3항 본문에 '인질구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정부의 정당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해당 매체는 공익을 위한다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어긋난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문은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포괄적 엠바고에 불구하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요청하면서 그 제재대상으로 원고 외에도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이하 '미디어오늘

등'이라 한다)를 거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문 제3항 본문의 기재 내용은 미디어오늘 등에 대한 제재사유와 원고에 대한 제재사유를 종합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포괄적 엠바고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를 지속, 확대 게재하였다는 미디어오늘 등에 대한 제재사유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문은 제3의 나 1)항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사유를 '본 사건의 경우 인질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기사화 전 취재내용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할 경우 포괄적 엠바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인터넷 및 석간으로 보도'한 사실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 소속 기자들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 대변인 김○○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서도 국방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문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이 진실 이더라도 그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

다757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된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속해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문을 통한 제재 요청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엠바고 요청 및 그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공문에 의해 원고의 명예·신용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문은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원고의 명예·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조치가 있었던 2011. 1. 24. 무렵 원고를 비롯한 언론사들을 통해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이 보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방부는 이 사건 공문을 국무총리실 등 각급 행정기관에만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한 각급 행정기관도 원고 등에 대한 제재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문을 열람시켰을 뿐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문은 불상의 경위로 이를 입수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원고도 스스로 제일 먼저 이 사건 공문을 전문 게재하면서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부산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공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조치의 위법여부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보도를 유예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가) 엠바고란 ‘취재원(정보 제공자)과 취재기자들 사이에 특정사안에 대한 보도를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신사협정’으로 정의되는데, 취재원의 엠바고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요청을 받은 취재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달리 국가기관 등 취재원이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취재기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거나 일부 취재기자들이 엠바고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 나머지 취재기자들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등 엠바고의 준수를 강제하는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에 있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엠바고 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거나, 다른 취재기자들이 취재원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음을 알게 된 경우 당연히 그에 따라 관련 내용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엠바고는 개념상 대상 사안이 다른 취재자에게 의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히 취재원이 국가기관처럼 반복적으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재자가 통일적으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보도유예가 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엠바고가 필요한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전에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하여 그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특히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다른 취재기자들에 의해 엠바고 요청이 수용되었음을 알면서도 엠바고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재기자들에게 특정 사안을 보도하기 전에 항상 관련 내용에 대한 엠바고 요청 및 그에 대한 다른 취재기자들의 수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보도하려는 내용이 국가 안위나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한 경우 및 엠바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엠바고 요청을 받은 취재기자들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경위 및 취지, 당해 사안이 보도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도하려는 특정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사안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에 따라 그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원고 소속 기자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받은 바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차 작전은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해 있다가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의 성격상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점, ② 인질구출과 같은 군사작전의 경우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하여는 관련 내용이 비밀에 붙여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실패를 납치범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출작전의 경위와 배경, 우리 군이 납치범들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이 사건 제1차 작전 실패로 인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 및 그에 따른 조치의 경과, 작전 실패에 따른 우리 군의 후속 구출작전의 실행에 대한 의지 여부 등은 구출작전이 최종적으로 성공하거나 포기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제1차 작전의 실패에 관한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후 펼쳐질 추가적인 구출작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계다가 이 사건 기사는 소제목이 ‘피랍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중’이라 되어 있고, 기사 내용 중에는 ‘국방부는 20일 중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출작전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구출작전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⑤ 1959. 9. 4. 설립된 언론사로서 50여년간 신문을 발행해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보도가 인질로 잡힌 선원들이나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05. 7. 4. 대통령 참석에 따른 보안 문제로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과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수용이 있었음에도 해군 진수식을 사전 보도하였다가 청와대로부터 출입제한 3개월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제1차 작전과 같은 중요 군사작전에 관한 사안의 경우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 실제로 원고 소속

기자들은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제보를 받고 확인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변인 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에서 엠바고를 요청하였음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소속 기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과 국방부 출입자들이 이를 수용한 취지를 존중하여 그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조치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각 조치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정기관이 기자실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취재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취재 기자에 의한 공무원 개인 혹은 담당 부서에 대한 취재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기사의 경우 기자실에서의 브리핑 및 보도 자료 제공에 의존하여 관련 기사를 작성, 보도하는 것이 관행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어느 언론사가 행정기관의 기자실 출입 및 보도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면 신속·정확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는 중요 취재원인 행정기관에 대한 취재에 있어서 큰 제약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기자실에 출입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시혜적 편의제공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헌법상 보장되는 취재의 자유는 기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권력기관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자유권 일 뿐, 나아가 취재원에게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행정기관이 기자실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취재원이 취재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점, 언론사가 엠바고를 파기할 경우 기자실 출입정지,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의 제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실 출입기자의 등록 및 출입제한, 보도자료 제공의 대상 및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점 자체만으로 이 사건 각 조치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원고 등 언론사에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운영하는 기자실 출입 및 보도자료의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치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3348호) 제15조(취재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방홍보훈령 (국방부훈령 제1092호) 제6조

③ 국방부 대변인은 주간 보도계획을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출입기자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사안과 일정은 브리핑 시점까지 보도자제(엠바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절차상 하자 여부

이 사건 각 조치가 엠바고 파기에 대한 제재를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해 온 관행과 달리 각 행정기관이 직접 제재를 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자실을 운영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주체는 청와대 등 행정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 등 제재도 행정기관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엠바고 파기 등을 이유로 한 기자실 출입제한 등 제재가 주로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이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의견을 존중해 그에 따라온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행정기관 스스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지 않고 행정청 스스로 제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조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조치가 엠바고를 요청한 국방부 외의 다른 행정기관에 출입하는 원고 소속기자들까지 제재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대로 엠바고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출입기자에 한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작전에 관한 엠바고를 요청한 국방부의 출입기자단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조치는 피고 산하 전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이 사건 공문에 따라 행정기관별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하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조치는 1개월간의 기자실 출입제한 및 보도자료 제공중지에 그쳐 납치된 이 사건 선박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엠바고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엠바고 파기에 따른 제재조치에 비해 과중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각 조치에 따른 출입정지 기간 내에도 원고 소속의 청와대 출입기자인 박○○는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북약산 동반 산행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

과정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인 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출입금지요청을 받았으나 강제로 쫓겨나지는 않아 취임식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등 출입정지 조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조치가 제재사유와 제재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국방부의 이 사건 공문 발송과 청와대 등의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권민호

판사 정범식

[판례 2]

2009나14267 판결

판결선고 : 2012. 8. 23.

**검찰 수사과정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를 이유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한편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검사가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여 검찰의 수사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김○○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한 김○○ 가족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기사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제3부
판 결

사건 : 2011다40373 손해배상(기)

원고 : 최○○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최○○

피고 : 1. 주식회사 참언론

대표이사 표○○

2. 주○○

소송대리인 이○○, 최○○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그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 없이 곧바로 위법성 판단을 한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

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的重要内容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김○○은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01. 12. 20. 미국으로 도피하여 법무부가 2004. 1.경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김○○이 미국에서 인신보호청원을 하는 등으로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전 서울특별시장의 2007. 8. 19.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는데, 이○○ 후보자가 김○○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후보자가 김○○의 범행에 관련되었는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하였고, 이○○ 후보자가 대통

령 후보자로서 충분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 김○○은 2007. 10.경 미국 당국에 인신보호청원을 취하하고 국내 송환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특별수사팀이 2007. 11. 6. 구성되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 범죄, 대통령민주신당의 이○○ 후보자 주가조작 고발사건 등(이하 'BBK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었다. 원고들은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참언론(이하 '피고 참언론'이라 한다)은 시사주간지 '시사IN'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는 '시사IN'의 뉴스팀 소속 기자이다.

3) 피고 주○○는 2007. 11.경 김○○의 누나 □□□김에게 전화하여 인터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2007. 11. 26.경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여 2007. 11. 27.과 같은 달 28. □□□김과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 주○○는 2007. 12. 3. □□□김의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났는데, □□□김은 2007. 12. 5.로 예정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하면서 피고 주○○에게 김○○이 검찰로부터 회유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보여주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테이프를 들려준 후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를 건네주었다. 위 메모지는 김○○이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청사에서 장모와 면회 중 필담을 나누면서 작성된 것이고, 위 녹음테이프는 김○○이 검사와 수사관의 입회 아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실에서 □□□김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4) 피고 주○○는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일치하고, 위 메모지의 작성 장소나 전화 통화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피고 주○○는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피고 참언론의 편집국에 보내 다른 기자들 및 변호사와

상의하고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였다.

5) 그 후 피고 주○○는 위 메모지 사진을 첨부하고, 메모지, 녹음테이프의 내용, □□□김 및 김○○의 처 이○○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김○○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참언론은 2007. 12. 4.자 '시사IN'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6) 검찰은 2007. 12. 5. 11:00경 BBK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BBK는 김○○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이○○ 후보자가 김○○의 BBK 관련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7) 국민의 상당수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BBK 사건이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 12. 28.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별검사는 40일에 걸친 수사 끝에 2008. 2. 21. 검사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BBK 사건에 관한 검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인 한편, 피고 주○○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작성자의 의견을 보류하고 메모 내용을 옮기거나 김○○ 가족의 진술을 인용하는 중립적 태도로 작성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

어,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마.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일반인들은, 원고들이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형량을 수단으로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기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수사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없지 않았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당이나 언론의 역할이 필요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검찰의 해명을 듣거나 김○○의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 피고들의 행위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사정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본판례]

취재대상과 대립관계에 있는 취재원의 정보만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기사의 내용은 원고사원들이 신문판매점을 방문, 예고 없이 거래중지를 통고한 사실 등을 비판하는 것이었으나, 신문판매점의 접장이 소지하고 있던 광고전단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허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 소송으로 다투는 등 대립관계에 있다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하나,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고재판소

사 건 : 2010(受) 1529호 손해배상 등 청구
원 고 : 주식회사 요미우리신문 세이부분사 외 3인
피 고 : 데이하라 하루오

판결선고 : 2012. 3. 23. 제2 소법정 판결
1심 판결 : 사이타마지법 2009. 10. 16. 선고
2008(ㄱ) 613호 판결
2심 판결 : 도쿄고법 2010. 4. 27. 선고
2009(ㄴ) 5834호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709조 · 제710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도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마스모토 요시로 외의 상고수리신청 이유에 대하여

1. 본건은 원고들이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피고가 게재한 기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2.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의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회사는 큐슈지구를 중심으로 일간신문의 발

행·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원고인 고오노 타로, 오토야마 마츠오, 헤이카와 다케오(이하「원고 고오노 등」으로 한다)는 모두 원고회사의 종업원으로 원고 고오노는 법무실장의 지위에 있으며 오토야마 및 헤이카와는 판매국에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프리 저널리스트로서 인터넷상에 스스로 개설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웹사이트 등에 신문의 신문판매점에 대한 대응이나 신문업계의 체질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3) 피고가 2008년 3월 1일에 본건사이트에 게재한 「임시뉴스」 본건기사에는 「요미우리신문 세이부본사는 1일 후쿠오카현 쿠루메시에 있는 YC코다의 보타점장에게 내일 2일부터 신문의 배급 및 거래를 중지한다고 통고했다. 현지의 관계자들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1일 오후 4시 경 세이부본사의 고오노 법무실장, 오토야마, 헤이카와 등 3명이 사전연락도 없이 방문, 보타점장에게 거래 중지를 통고했다고 한다」는 기사에 이어「더욱이 다음 날 조간에 접어 넣을 예정이었던 광고전단 등을 가져갔다. 이것은 절도에 해당하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는 기재가 있다.

(4) 2008년 3월 1일 원고 고오노 등이 YC코다를 방문, 거래중지를 통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에 본건판매점으로부터 다음 날 조간에 접어 넣을 예정이었던 광고전단 등을 가져간 것은 원고 고오노 등이 아니며, 신문광고전단 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요미우리 세이부 아이에스(이하「소외 회사」로 한다)의 종업원이었으며, 동 종업원은 본건판매점 점장의 동의 하에 이를 가져갔던 것이다.

(5) 원고들은 본건기재부분이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3. 원심은 상기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만 한다고 했다.

본건기재부분 중 「더욱이 다음 날 조간에 접어 넣을 예정이었던 광고전단 등을 가져갔다」는 제1문단 부분은 본건판매점을 방문, 거래중지를 통고한 원고 고오노 등이 돌아갈 때 점포 안에 있던 광고전단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제2문단인 「이것은 절도에 해당하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제1문단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의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판단했다.

본건 기사를 읽은 일반 열람자들은 피고가 원고의 갑작스러운 거래중지 통고 등을 비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를 원고 고오노 등이 실제로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이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본건기재부분에 의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4. 그러나 원심의 상기판단은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기사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만 한다.(최고재판소 1954년(才) 제634호, 동 1956년 7월 20일 제2소 법정 판결 참조).

전기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기재부분은 제1문단과 제2문단이 어울려서, 원고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본건판매점을 방문한 원고 고오노 등이 본건판매점의 점장이 소지하고 있던 광고전단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본건기사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이 명백하다.

(2) 그리고 전기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판매점의 점장이 소지하고 있던 광고전단은 소외 회사의 종업

원이 본건판매점 점장의 동의 하에 가져갔다고 함으로, 본건기재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은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며, 또한 피고는 원고회사와 소송으로 다투는 등 대립관계에 있다는 제3자로부터의 정보를 근거로 본건사이트에 본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할 뿐이며, 본건기재부분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사이트에 본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이상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본건 기사에 대해 불법행위 구성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만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다.

논지는 이유가 있으며, 원판결은 파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따라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판례시보』 2147호/P.61~63

■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1]

과거 기사에 Facebook이나 Twitter와 연계된 “공유하기” 버튼을 추가한 것은 기사의 재출판이라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뉴욕 법원의 단일 출판 규정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단일 출판물의 경우 출판물의 배급 규모나 해당 내용이 포함된 사본의 갯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출판물로 취급하며 하나의 소송사유만이 될 수 있고 명예훼손의 소멸시효는 뉴욕주의 경우 1년인데 이는 첫 출판 시점에서부터 계산하며,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가 처음으로 판매되거나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가장 이른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출판되었을 경우 재출판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재출판은 소멸시효 적용시점을 다시 발효시키는데, 이는 원본 출판물의 누적 출판과는 별개로 단순히 원본의 배급이 늦춰진 것과는 다른 경우여야 한다.

나. 하이퍼링크가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킹 웹사이트 등을 통해 종전 기사를 새로운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DNLP가 의도한 독자층은 DNLP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이다. 또한, 이들 독자들은 지금껏 본 기사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출력하여 원하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었다. DNLP의 새로운 CMS는 단순히 웹독자들이 본 기사를 발전된 기술을 통해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과 종전 기사에 미미한 수정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기사가 복구된 것은 원본 기사의 배급이 늦춰진 것으로 보이며 재출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뉴욕 카운티 뉴욕 고등법원
(New York Supreme Court New York County)

원고 : Larry D. Martin

피고 : Daily News L.P. and Errol Louis

사건번호 : 2012 BL 94580

판결선고 : 2012년 2월 10일

기초사실

본 소는 2007년 피고 Daily News L.P.(DNLP)가 발간하는 The Daily News 기사의 출판 및 재출판에 대하여 제기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The Daily News의 인쇄판과 웹사이트에 2007년 2월 8일 게시되었다.

소장에 따르면, 2007년도 기사는 뉴욕 주 킹스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인 원고 Larry D. Marti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재판 중인 Martin v. Daily News et al (Action No.)¹⁾과 관련하여 본 법원은 2007년도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DNLP가 소장에 답변하도록 지시하였다.

2007년 3월 9일, DNLP는 기존의 웹사이트를 새로운 콘텐츠 관리시스템(CMS)을 적용한 nydailynews.com으로 전환하였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업로드되어 있던 기사들을 기존 CMS시스템에서 새로운 CMS으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들은 DNLP의 인쇄본을 통해 이동되어야 했다. 새로운 CMS 시스템 런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기사와 동년 1월 1일에 발행된 기사들은 무기한으로 DNLP 웹사이트에 제공되지 않게 되었다.

2010년 3월, DNLP의 법률대리인은 2007년 기사가 DNLP 웹사이트에 더 이상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웹사이트에 재업로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Action No.1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증거 인멸로 보여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2007년도 기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DNLP의 수석 멀티미디어 편집인인 Ethan Sacks가 2007년

도 기사를 검색하여 새로운 양식에 맞추어 2007년도 부터 2010년까지의 URL을 업데이트하였다. Sacks는 이어 2007년도 기사가 The Daily News에 새로운 기사처럼 보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자명 출처(byline credit)를 부가적으로 입력하였다. 필자명 출처는 “Daily News 사설 컬럼니스트”가 2007년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본 소에서 원고는 2007년도 기사를 웹사이트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DNLP가 Action No.1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알게 된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하거나 부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였다. 본 소는 2007년도 기사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자료의 ‘재출판’이라고 정의하였다.

피고는 CPLR 3211(a)(1)와 3211(a)(7)에 의거하여 증빙서류와 청구원인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본 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본 소가 부당하게 제기되었으며, The Daily News의 기사들을 보존하는 과정이 재출판으로 정의된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단일 출판 규정”²⁾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1년 소멸시효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2007년도 기사의 복구과정에 대한 소의 제기는 법리에 어긋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NLP는 명예훼손에 필요한 직접적인 악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설 명

CPLR 3211에 의거하여 소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융통성 있는 변론의 구성을 허가하기로 한다. 본 소에서 주장된 사실들을 법원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 가장 유리한 추론을 해야 한다. 본 소의 목적은 재출판의 모든 구성 요소를 밝히

1) Action No.1에서 법원은 Louis가 작성한 2007년 1월 28일자 기사와 관련한 모든 주장을 기각하였다.

2)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577a(4)항 “단일 출판물의 경우 (a) 오직 한 가지 소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b) 하나의 소에서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하며 (c) 하나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혹은 패소가 판결되었다면 어떠한 사법권 내에서도 같은 당사자들에게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는 것이 아니라 본 소가 재출판 법리에 맞는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CPLR 3211(a) (1)에 의하면 증빙자료가 모든 주장에 대해 확정적으로 확실한 반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소를 기각할 수 있다.

Rare 1 Corp. v. Moshe Zwiebel Diamond Corp에서 설명된 것처럼, 뉴욕 법원의 단일 출판 규정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단일 출판물의 경우 출판물의 배급 규모나 해당 내용이 포함된 사본의 갯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출판물로 취급하며 하나의 소송사유만이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소멸시효는 뉴욕주의 경우 1년인데 이는 “첫 출판 시점에서부터 계산하며,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가 처음으로 판매되거나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가장 이른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출판되었을 경우 재출판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Firth v. State of New York (Firth I)에 따르면 재출판은 소멸시효 적용시점을 다시 발효시키는데, 이는 원본 출판물의 누적 출판과는 별개로 단순히 “원본의 배급이 늦춰진 것”과는 다른 경우여야 한다.

본 쟁점과 관련하여 두 번째 출판물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원본 출판물과는 다른 새로운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느냐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출판에 해당하는지 또한 새로운 소멸시효 발효에 따라 별도의 소송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수정판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소송사유가 될 수 있다. Rinaldi [같은 책의 하드커버와 페이퍼백 판의 경우]; Cook v. Conners [같은 개인이 발간하는 조건과 석간신문의 경우]; GRegoire v. G.P. Putnam’s Sons [재고처리는 재출판으로 보지 않는 경우]; Lehman v. Discovery

Communications Inc., [TV 프로그램의 재방송은 새로운 청취자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 재출판이라고 판단한 경우]; Haefner v. New York Media, LLC [“디지털 전자책”화된 경우 원본 출판물의 배급이 단순히 늦춰진 것으로 판단한 경우]; Firth v. State of New York (Firth II) [피고가 주장된 재출판에 관련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음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은 웹사이트의 다른 주소로 이동되었다면 새로운 소송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단일 출판 규정은 “다수의 중복소송을 막고 악용 및 책임 과중을 예방하며 법원의 제한된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또한 “원고가 한 사법권에서 시작된 소송에 모든 손해배상의 건을 포함시켜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이러한 목적에 합당하게 단일 출판 규정은 모든 인터넷 출판물에 적용되며 인터넷에 게시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감상하는 것은 재출판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2007년도 기사가 재출판되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도 기사가 DNLP에 처음으로 게시되었을 때 “공유하기” 버튼이 없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독자들이 facebook이나 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킹 사이트에 공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³⁾ 복구된 2007년도 기사는 공유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새로운 독자들에게 기사가 배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⁴⁾

DNLP는 인터넷 출판물에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것은 재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Haefner v. New York Media, LLC를 예로 들며 이에 반박하였다. 그러나 본 건과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차이 나는 판결을 본 쟁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Haefner는 예전에 출

3) DNLP 웹사이트에 2007년 기사가 처음 게재되었을 때 독자들이 전자우편으로 다른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만 포함되어 있었다.

4) 원고는 DNLP 웹사이트에서 2007년 기사를 보고 facebook 공유 기능을 클릭한 Thomas A. Catalan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atalano는 이어 그가 2007년도 기사를 107명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공유하였고, “친구들”은 역시 그들의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판된 적이 있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와 기사 내 포함된 링크에 대한 소송이었다. Haefner에서는 하이퍼링크는 원본 기사에 접속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었을 뿐이었으나 본 건의 경우 하이퍼링크는 2007년도 기사를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킹 사이트 등에 배급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DNLN의 웹사이트에 복구된 2007년도 기사가 별도의 재출판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이퍼링크가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킹 웹사이트 등을 통해 2007년 기사를 새로운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DNLN가 의도한 독자층은 DNLN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독자들이 아니며, 2007년 기사가 처음으로 DNLN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을 때의 독자와 같은 독자들이다.

또한, 이들 독자들은 지금껏 본 기사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출력하여 원하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었다. DNLN의 새로운 CMS는 단순히 웹독자들이 본 기사를 발전된 기술을 통해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독자들”이라는 집단은 DNLN의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DNLN 웹사이트의 독자들, 즉 제3자의 행동에 의존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과 2007년 기사에 미미한 수정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기사가 복구된 것은 원본 기사의 배급이 늦춰진 것으로 보이며 재출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DNLN는 2007년 기사가 DNLN 웹사이트에 복구된 정황에 대해 개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Ethan Sacks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본 제출은 DNLN가 2007년 기사를 유의미하게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는 것을 증명하며, 오히려 본 기사가 3년 전에 이미 작성되어 출판된 것임을 강조하였고 독자들이 본 기사가 새롭게 작성되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DNLN가 절차를 밟았음을 보이는 바이다.

이러한 이유들에 2007년도 기사를 재출판하지 않

았음을 판결한다. 따라서 본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DNLN의 2007년 기사를 복구한 행위가 재출판이 아니라고 판단, 본 소가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바, 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만약 본 소가 소멸시효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해도 피고 Louis에 대한 주장들은 기각되었을 것이다. Louis에 대해 소장은 결론적인 혐의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주장은 그가 2007년 기사를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출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지시하였는지, 누가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는데, 이러한 자료에 Louis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가 재출판 과정에 참여하였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Karaduman v. Newsday Inc [뉴스 기사 연작의 재출판에 기자들이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바, 그들을 고소하는 본 소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Rinaldi; Cerasani v. Sony Corp; Davis v. Costa-Gavras [저자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출판된 작품의 창의적인 관리나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Daily News LP와 Errol Louis의 소송 기각 청구를 인용한다.

[미국판례 2]

가해자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악의의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퍼블리시권 침해 시 배심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획적인 성향이 있거나 혹은 배임이나 지속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와 인식을 불러오는 행위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경우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다. 단순한 불법행위 자체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피고의 행위가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단순과실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다.

이번 재판은 본 소의 두번째 항소심이다. 첫 항소심(Hustler I)에서는 Toffoloni의 LFP Publishing Group(LFP)에 소를 제기할 근거가 있다고 판결하였다.¹⁾ 본 소는 Hustler지 3월호에 Nancy Benoit가 살해된 지 일 년이 안 된 시점에 그녀의 20년 전 누드사진이 게재된 사건 때문에 제기되었다.

사진의 내용이나 정황 등은 Hustler I에서 빠짐없이 진술되었으므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Hustler I에서 우리는 디스커버리를 검토하고 Toffoloni에 약식재판(partial summary judgment)을 선고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후 원심법원의 배심원은 Toffoloni의 손을 들어 전보적 손해배상액 \$125,000,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19,603,600을 판결하였고, 지방법원은 이를 감액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50,000를 결정하였다.²⁾

양측 당사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 항소하였다. Toffoloni는 배심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인 \$19,603,600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FP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³⁾

제11구 연방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U.S. Court of Appeals Eleventh Circuit)

원고 : Maureen Toffoloni

피고 : LFP PUBLISHING GROUP LLC

사건번호 : 2012 BL 135997

판결선고 : 2012년 5월 1일

징벌적 손해배상

Toffoloni는 배심원이 산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19,603,600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지방법원이 LFP가 Toffoloni를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한 배심원의 판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LFP는 어

1) 원고 Maureen Toffoloni는 Nancy의 모친이며, Nancy의 사유재산의 관리자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지속되며 상속 및 유증이 가능하다.

2) 제조물 배상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지아 주법은 손해배상액을 \$250,000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나 행하지 않는 행위가 손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를 가지”거나 “음주, 약물 혹은 가스, 분드, 그 외 독성물질을 흡입한 상태”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그 이상을 산정하기도 한다. 지방법원은 본 소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법이 인정하는 한도액으로 손해배상액을 낮춰서 산정하였다.

3) LFP는 또한 본 항소심에서 지방법원이 Hustler I 의견에 대해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지방법원이 Benoit의 사진들이 뉴스가치가 없다고 확정적으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하였다. LFP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는 하나 지방법원이 그 외 판결에서 LFP가 새로운 증거자료로서 제출한 종합 기록 자료에서 단지 세 가지 새로운 사실을 사용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LFP는 항소심에서도 역시 그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뉴스가치 예외조항에 대해 Hustler I의 판결과 상충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항소심에서 역시 LFP는 그 세 가지 자료만을 본 법원이 Hustler I과 상충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세 가지 사실 외에 Hustler I에서 논의되지 않은 부가적인 주장이나 그 외 추가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United States v. Day [“본 법원은 첫 상고이유서에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않은 쟁점은 포기하거나 방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에 따른다.”] LFP의 새로운 증거자료 중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Lisby교수의 증언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고 판결에 반영하였다. 지방법원이 세 가지 추가 사실이 쟁점의 본질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 가지 사실증거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본 법원은 다른 두 사실 또한 상식적인 경험에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며 법원이 이미 적용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떠한 합리적인 배심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퍼블리시권 침해 시 배심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획적인 성향이 있거나 혹은 배임이나 지속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와 인식을 불러오는 행위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경우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다. “단순한 불법행위 자체 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피고의 행위가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단순과실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물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Colonial Pipeline Co. v. Brown]

본 법원은 본 건에 대해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만한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할 것이라는 LFP의 주장에 동의한다. LFP 직원들의 일관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언들은 그들이 실제로 문제의 사진들이 퍼블리시터권의 뉴스가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이 비록 잘못된 것이었을지라도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한다.

LFP의 소유자이며 LFP가 발간하는 잡지의 내용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Larry Flynt는 Benoit의 사진들을 잡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을 때 그는 ‘당연히’ 그 사진들이 뉴스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에 따라 Benoit나 Toffoloni의 추가적인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Flynt는 또한 그러한 부가적인 허락이 필요했던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LFP는 계쟁 중인 사진들을 게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본 건의 사진들과 함께 게재된 전문을 작성한 Tyler Downer는 LFP가 일반적인 관례와는 다르게 문제가 된 사진들을 사진사에게서 구매하기도 전에 LFP의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Benoit가 “뉴스에 너무나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Benoit의 권리 등이 그녀의 사망과 함께 소멸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LFP가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 부가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는 LFP가 “화보”가 아닌 “뉴스와 엔터테인먼트”에 해당하는 논평 섹션에 Benoit의 사진들을 게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계쟁 중인 사진들과 관련하여 작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08년 3월호가 발간되기 몇 주 전 Benoit의 전 남편인 Jim Daus는 Downey에게 전화를 걸었고 LFP에게 사진을 잡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지 질문하였다. Downey는 당시 Daus에게 “잡지에 사진과 함께 실는 기사는 뉴스이며 이 경우 Benoit나 그녀의 가족에게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했다. Daus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계쟁 중인 사진이 뉴스가치가 없다고 Hustler I 법정에서 판결하였을 때 Downey는 “하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으며...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믿음 하에 잡지를 발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Downey는 또한 Benoit의 사진들과 별도로 연예인들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파파라치가 촬영하는 연예인 사진과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잡지가 발간된 지 일주일 정도 후 Toffoloni의 법률대리인은 LFP에 사진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메모를 전달하였다. LFP 부사장 Donna Hahner은 LFP의 법률고문들에게 전달하였고, 그들은 Toffoloni의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할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답변서는 Georgia 법의 퍼블리시터권을 인정하면서도 계쟁 중인 사진들은 “합법적이고 Benoit의 삶에 대한 진지한 뉴스의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Benoit의 사진을 상업적인 의도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다.

Hahner는 “(본 사건과 관련한) 잡지회사의 모든 직원은 우리가 합법적인 언론의 자유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본 사진들을 잡지에 게재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뉴스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Nancy Benoit의 초기 인생을 다룬 수많은 뉴스들 중 하나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강한 믿음 이외에도 LFP는 사진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였다.

Toffoloni는 계쟁 중인 사진들이 뉴스가치가 있다고 고의성 없이 믿었다고 주장하는 LFP 직원들의 진술을 반박하는 어떠한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Benoit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만약 사진들이 뉴스가치가 있다면, LFP는 사진을 게재함에 있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LFP가 Benoit나 Toffoloni에게 사전에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Toffoloni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계쟁 중인 사진과 관련하여 LFP의 법률팀이 적어도 세 번 이상 - (1) LFP가 사진을 구매하기 전, (2) 2008년 3월호가 발간되기 전, 그리고 (3) Toffoloni의 법률대리인이 사진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을 때 -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은 LFP의 뉴스가치 예외조항 적용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한다. 각각의 경우 법률팀은 LFP에게 사진을 게재해도 괜찮다고 답변하였다.

지방법원이 계쟁 중인 사진들이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 건을 기각한 사실은 당시 LFP의 실수가 합리적인 것이었음을 가장 잘 뒷받침한다. 비록 Hustler I에서 원심의 판결이 파기되기는 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의 판단력 그 이상의 기준을 잡지발행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LFP의 퍼블리시티권의 뉴스가치 예외조항이 계쟁 중인 사진에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비록 잘못되었지만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배심원도 본 건의 피고에게 징

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한다고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 법원의 판결을 일부 확정하고, 일부 파기하여 환송한다.

[미국판례 3]

언론사의 상업적 행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서 해당 정보의 뉴스가치를 이유로 들어 청구 기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가. 뉴스가치가 있는 내용일 경우 게시물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일지라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경우 게시물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이는 때로는 특정 분야에 대해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나. “사고”와 같은 주제는 전통적으로 “뉴스”라고 인식되나 뉴스가치 예외조항의 범주는 “대중이 합당하게 제공될 권리를 가진 정보”를 벗어나는 상황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뉴스 발행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기업의 상업적인 행위에 대해 뉴스가치 예외조항의 법리를 들어 변론할 수는 없다.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Massachusetts)

원고 : Thomas F. Peckham III 외 3인

피고 : New England Newspapers Inc.

사건번호 : 2012 BL 135997

판결선고 : 2012년 6월 4일

Thomas F. Peckham III(Peckham)과 그의 아내 Stacia Peckham, 그리고 그의 부친 Adelaide Peckham, Thomas Peckham Jr.가 New England Newspaper Inc.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Peckham은 피고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피고는 이 소송에 대해 Fed.R.Civ.P. 12(b)(5)와 12(b)(6)에 의거하여 기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근거로 원고의 소장이 기한 내에 통지되지 않았으며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권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본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하 이유에 의해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기준

12(b)(5)는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를 기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4(m)에 따르면 “만약 소장이 접수된 이후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 기각신청에 따라 혹은 별도의 기각신청 없이 재량으로 원고에게 통보한 이후 - 기판력이 없는 판결로서 소를 기각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복할 경우 원고는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b)(6)에 의거하여 법리에 근거한 주장이 부족하여 소의 기각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소장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 유리한 모든 합리적인 추론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8(a)(2)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무엇인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공정한 통지를 받았음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탄원인이 배상의 집행에 근거가 있음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할 것만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Bell Atl Corp. v. Twombly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구제에 대해 타당한 주장이 소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각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법원은 또한 “만약 원고가 변론하는 사실의 내용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의 불법행위 혐의가 인정됨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배 경

다음의 사실들은 소장에서 제시된 사실들이며 법에 따라 소의 기각을 반대하는 당사자들인 원고에 가장 유리하도록 해석되었다.

2008년 7월 4일 한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Peckham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그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Peckham에게 부상을 입혔다. 구급 요원들이 현장에 도달하여 Peckham을 그의 차량으로부터 구조하려고 하였다. 구조 도중 의식을 되찾은 Peckham은 그의 아내와 부친이 현장에 도착해 길 옆에서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의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손을 흔들려고 하였고, 피고에게 고용된 사진기자가 이 순간을 촬영하였다. 같은 달 5일 피고는 North Adams Transcript에 본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위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설 명

A. 소 접수에 대한 통지

본 소의 주요 쟁점을 논하기에 앞서 법원은 원고 소 접수에 대해 피고에게 적법한 절차와 기한 내에 통지하였다고 판결한다. 원고는 2011년 6월 27일 소장을 접수하였다. 10월 14일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통지 기한을 추가적으로 12월 26일까지 60일 동안 연장하도록 허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12월 21일에 통지하였기 때문에 기한 내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피고의 기각신청을 기각하는 바이다.

B. 법리에 근거한 주장의 부재

법원의 심문에 따라 피고의 기각신청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Peckham의 사진들이 대중에게 네 가지 방법으로 공개되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1) 2008년 7월 5일 신문의 인쇄본 (2) 신문의 웹버전 (3) 별도로 구매 가능한 피고의 보관용(백업용) 사이트, 그리고 (4) 대중이 구매 가능한 다양한 상품 등에 부착 가능한 사진 등이다. 법원과 피고의 법률대리인이 재판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대중에 직접 사진이나 상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나 제3자가 해당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수수료 문제 등을 처리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만약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이는 피고와 제3자의 관계에 해당할 것이다.

원고는 사고현장의 사진들을 North Adams Transcript의 인쇄본이나 웹버전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에서 원고의 법률대리인은 개별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뉴스가치 예외조항에 의거한 변론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성공적으로 입증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이는 원고의 주장이 네 번째 방법, 즉 상업적 물품에 인쇄된 사진의 판매에 대해서만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단순히 티셔츠, 찻잔, 마우스패드 등에 사고현장의 사진을 컬러로 복사하여 판매함으로써 Peckham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충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소를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헌법 제1조를 이유로 들어 뉴스가치가 있는 내용을 게재할 권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주장의 요지는 상업적인 물품 판매의 경우에도 사고현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적법한데, 그 근거는 그러한 행위가

교통사고와 관련한 출판이고 이는 적법한 공공이익의 실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래의 근거에 따라 법원은 기각요청을 수리하기에는 선부르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다.

1. 매사추세츠주의 프라이버시권

1890년 Samuel D. Warren과 Louis D. Brandeis는 새로운 불법행위판례법에 대해 세미나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바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Howard v. Antilla [“모든 불법행위의 판례법을 정확하게 집어내어 정립하기는 어렵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판례법에 관한 “넓은 범위의 경계”를 Warren과 Brandeis가 제시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로부터 반 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후 William Prosser는 프라이버시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네 가지의 소송원인으로서 다음 경우들을 제시하였다. (1) 개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 (2) 곤란한 사실들을 공시하는 경우 (3) 개인의 이름이나 유사함을 도용하는 경우 (4) 개인에 대해 오보하는 경우 등이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전반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은 MGL c. 214 1B에 명시되어 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이 그의 사생활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상당하거나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c. 214 3A에서는 “개인의 이름, 초상화나 사진을 주내에서 허락없이 광고나 그 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이 기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법령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은 법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기각신청의 판결에서 원고는 두 가지 법령 모두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1B와 3A 모두 원고의 소장에서 주장된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이 법적인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대신 뉴스가치 예외조항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주장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두 법령 모두에 의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한다.

2. 뉴스가치 예외조항 반론

뉴스가치가 있는 내용일 경우 게시물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일지라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경우 게시물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이는 때로는 특정 분야에 대해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First Circuit이 언급하기를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 그 자체로는 뉴스가치가 없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뉴스가치가 있는 주제와 상당한 관계를 가진다면 예외조항이 적용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소의 뉴스가치 예외조항의 적용가능성은 원고가 주장한 모든 주장에 대해 적법한 반론이 될 수 있다. *Dineen v. Dept social servs* [프라이버시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기된 소를 뉴스가치가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기각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프라이버시권의 주장과 언론의 자유가 늘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이는 양쪽의 의견이 사회의 전통과 이익의 추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보다는 “공공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정보 전달의 기능을 잃고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정당성 없이 침해하는 경계의 한계선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본 법원은 우선 본 분쟁에 앞서 “뉴스가치”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법리의 문제인지 혹은 사실관계의 문제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관련 쟁점들이 둘 중 한 가지로만 한정짓지 않고 중간점으로서 배심원이 소송의 사실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전에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의무가 막

중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르게 말하자면 해당 출판물이 법적으로 뉴스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이라면 과연 대중이 경쟁 중인 출판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판사가 배심원 판결이 합당한지를 가늠하는 필수 확인절차를 밟았다고 가정할 때, 법원은 법적으로 뉴스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Howell v. Enterprise Publishing Co, LLC* [출판물이 뉴스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심원에게 위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법원이 결정할 권리를 가짐]

확실한 것은 법원이 이러한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판례법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관련 기능이란 합리적인 배심원들이 (1) 쟁점이 대중에 적법하게 관련이 있는가 (2) 출판물과 쟁점과 상당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 불일치한 의견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Ayash v. Dana Farber Cancer Institute* [뉴스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경쟁 중인 뉴스기사의 주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출판물에 의해 대중에게 드러난 원고의 개인적인 정보와 주제가 타당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본 소와 관련해서는 법리에 의거했을 때 법원은 피고의 기각신청을 승인해야 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현재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는 원고가 접수한 소장의 두 줄이 전부이다. 하나는 피고가 “티셔츠, 찻잔, 마우스패드 등에 사고 현장의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복제”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우스패드, 티셔츠, 찻잔 등에 사고 현장의 사진을 악용하였기 때문에 Peckham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부가적 사실이 밝혀질 것인지에 대해 추측할

수밖에 없고, 이를 거부하는 바이다.

법원이 아는 한 매사추세츠 주 혹은 연방 법원 내에서 기각신청 단계에서 뉴스가치 규정 적용 적법성 여부 대해 합리적인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는 *Bonome v. Kaysen* 단 한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뉴스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많은 경우 디스커버리가 끝난 이후 판결이 이루어졌다.

둘째, 뉴스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Bonome v. Kaysen* 에서 인정했듯 “침해 불가한 개인 정보와 대중의 이익에 적절한 내용인지에 대해 구분짓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법원이 “[계쟁 중의 출판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서술했다. 비록 해당 법원이 계쟁 중이었던 출판물이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본 법원의 견해로는 증거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확실한 것은 “사고”와 같은 주제는 전통적으로 “뉴스”라고 인식되나 뉴스가치 예외조항의 범주는 “대중이 합당하게 제공될 권리를 가진 정보”를 벗어나는 상황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¹⁾

따라서 뉴스 발행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기업의 상업적인 행위에 대해 뉴스가치 예외조항의 법리를 들어 변론할 수는 없다. 이는 M.G.L.c.214 Sec 3A의 작성자가 정한 경계선에 위배되는 것이다. 3A는 개인의 “이름, 초상화나 사진”에 적용가능하며 그들을 “홍보 목적이나 다른 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SJC가 언급했듯 “3A에 의거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름, 초상화나 사진을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과 고의적으로 홍보나 거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Tropeano v. The Atlantic Monthly*

Co.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은 “계쟁 중인 사진을 출판한 것은 분명히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판매나 그 외 홍보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사진을 포함한 기사가 “적법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 신문사는 3A에 의거하여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상업-비상업 이분법은 본 소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및 뉴스가치 예외조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한 기준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제시된 이유들에 따라 법원은 뉴스가치 예외조항 변론의 경계선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바, 공판배심을 허가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목적에 의거하여 법원은 사고현장의 사진이 적법한 뉴스 기사와 함께 출판된 이후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을 경우 “단순한 정보전달”인지 “공익과 관계없이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배심원들의 의견이 불일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지금의 소송단계에서 뉴스가치 예외조항에 대한 쟁점이 법원이 판결할 문제인지 혹은 배심원의 판결에 맡겨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적법한 공공의 이익의 경계선은 매사추세츠 판례에 의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기각신청을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결 론

명시한 이유들에 의거하여 피고의 기각신청을 기

1) 652D comment (에 의하면 “적법성의 범위”는 단순한 ‘뉴스’ 이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일종의 보고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스테이트먼트에 설명되어 있듯 “대중이 게시물에 대해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 이름의 사용, 유사성, 혹은 공공에게 교육, 오락 및 이해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도 반론이 가능하다.

각한다. 법원은 본 소의 일정을 상의하도록 명령하는 바이다.

■ 출처 : 「MEDIA Law Reporter」

미국판례 1 : Vol. 40/ P.1749-1752

미국판례 2 : Vol. 40/ P.1681-1684

미국판례 3 : Vol. 40/ P.1849-1853

■ 번역 : 류민우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외국신문평의회 사례

[영국사례 1]

**개인의 자필서신을 동의없이 기사에
복사·전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다.**

신청인 : 익명의 여성

매체명 : Sunday Life

불만내용

(1) 한 여성은 2012년 1월 29일자 <Sunday Life>지에 실린 “강간범에게 보내진 피해자의 사과 편지” 제하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를 위반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11조(성폭행 피해자)를 위반하여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임이 알려지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불만신청은 인용되었다.

신청인은 Jason King의 범죄피해자인데, 그는 12~15세 소녀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9건의 강간죄를 포함해 총 58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신청인의 일기는 그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수년 후, 신청인은 Mr. King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당신이 감옥에 가길 원치 않았으며, 당신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스스로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일기는 거짓이었다”고 전하면서, 그에게 감옥 면회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자필서신을 확보하고 기사로 내보내기 전,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으며 기사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는 익명 처리하였다.

신청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Mr. King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나 신청인이 그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는 사생활의 문제

라는 것이다. 그녀는 (과거 사건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언론사는 기사가 불러온 잠재적인 해악에 대해 인식했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의 현재 나이,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 나아가 그녀의 필체 등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임을 특정시키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는 문제의 기사가 불러온 신청인의 고통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편지를 통해 신청인이 여전히 자신을 조종한 한 남성에게 ‘얼이 빠져있는’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 즉, Mr. King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의 피해자들에게 정서적인 위력을 행사하는 지에 치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서신을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보여준 것이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이미 Mr. King의 범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자신의 딸이 그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그 편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았다. Mr. King이 관련 서신에 대해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그 편지는 공중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Mr. King이 문제의 편지를 이용해 항소에 착수하려고 한다고도 알려졌다.

또한 언론사는 보도윤리강령 제11조(성폭행 피해자)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는 재판 당시의 언론사의 보도 이외에 신청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과 제4조(괴롭힘) 위반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서신을 읽고 드러낸 감정적인 반응을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머니 - 신청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 가 기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마음 아파”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또한 기자가 보도윤리강령 제4조(괴롭힘)를 위반해 겁을 주는 행동을 취하며 그녀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는 기자와 신청인 및 그녀의 어머니와의 대화내용 - 신청인의 어머니가 편지로 인해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 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신청인의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기사는 신청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에서 노크를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에, 부재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후일 다시 한 번 더 찾아 갔으며 본인의 신원을 밝힌 후 초대를 받고 집안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5분여간 진행되었고,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한 번 더 전화인터뷰를 하였다고 밝혔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일부 인용한다.

평결

(1) 문제의 기사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대다수의 독자들이 볼 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도 아니었던 만큼 다소 이례적인 불만 신청에 해당한다.

보도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는 “모든 사람은 그(그녀)의 사생활과 가정생활, 집, 서신 등에 대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 Mr. King에 대한 신청인의 감정은 매우 사적인 문제로서, 그 서신은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신청인이 특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는 개인 서신교

환에 대해 보호받아야 할 (사적인) 권리가 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속하는 대항력을 갖 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신청인의 편지에서 생생하게 묘사된 심각한, 장기 간에 걸친 성적 학대를 분석한 것은 명백한 공공의 이해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인의 심각한 취약성 - 그녀가 극심한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 과도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

서신의 복사·전재 및 신청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대중에 공개한 기사는 그녀에게 분명히,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언론사는 보도의 목적 - Mr. King이 그의 범죄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정도를 널리 알리는 것 - 을 달성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침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자필서신을 동의없이 기사에 복사·전재하는 것은 보도윤리강령 제3조 위반이며, 이는 정당화되지 못할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

덧붙여, 언론사는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해당 서신을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여겨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그녀의 가족관계에서조차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 성인이다. 서신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것이 그녀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가져온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해당 서신을 보여주기로 한 언론사의 결정에는 보도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의 추가적인 위반이 있다.

보도윤리강령 제11조(성폭행 피해자)는 “언론사가 충분한 정당성을 갖거나, 법적으로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면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그러한 특정화를 돕는 자료를 공개해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의 현재 나이, 사건당시의 그녀의 나이, 그녀의 거주지, 그녀의 독특한 필체가 드러난 서신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보도윤리강령 제11조(성폭행 피해자)를 위반한 것

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그 위반을 피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2)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는 “언론사는 부정확한 정보를 보도해서는 안되고 중대한 실수는 즉각적 혹은 적절히 주요한 방식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그녀의 어머니가 서신을 읽고 난 뒤에 보인 반응을 묘사한 기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기사는 그녀가 심히 화난 것으로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기자에게 언급한 다른 내용에도 드러나 있다. 비록 기자가 신청인 어머니의 반응을 묘사하면서 개인적인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보도를 할 자격이 있으며, 불만이 제기된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은 해석이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충돌하는 위 두 증언을 조화시키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 이것은 보도윤리강령 제1조의 위반이 아니다.

보도윤리강령 제4조(괴롭힘) 위반과 관련해, 위원회는 기자의 방문에 의해 그녀의 어머니가 겁을 먹었다고 주장한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언론사는 기자가 환영을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갔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신청인의 집을 떠났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기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그 서신에 대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인터뷰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지 않았으며, 그 집을 방문한 것 1회, 전화인터뷰 역시도 1회에 그쳤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쓴 서신에 관한 정보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공개함으로써 신청인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보도윤리강령 제4조(괴롭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영국사례 2]

10대 소녀에 대해 보도할 때는 그 부모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 : 한 부부

매체명 : Camberley News

불만내용

한 부부가 2012년 3월 2일자 <Camberley News>에 실린 “Mica의 자선가판대가 만든 달콤한 결말” 제하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와 제6조(아이들)를 위반하여 이들의 10대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 불만 신청은 인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ME Research UK(만성피로증후군 연구센터)의 기금 모집을 위한 직거래장터에서 13세 소녀가 자신의 친구 - 신청인의 딸 - 가 걸린 병 때문에 케익을 판매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신청인 부부의 자녀 사진을 게재함과 동시에 그녀가 만성피로증후군(ME; myalgic encephalomyelitis) 환자임을 보도했다. 신청인 부부는 언론사가 그들의 자녀 사진을 촬영하도록 허락했지만,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그녀의 병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보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가족들은 그녀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라는 사실이 필요한 경우에만 알려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왔던 만큼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 부부의 딸에게 극심한 고통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는 문제의 기사가 기금모금 행사계획을 지지하는 의도에서 보도되었고, 신청인 부부가 느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들의 선택을 좇아 관련 연구센터에 금전적인 기부를 하였음도 강조했다. 또한 취재는 행사의 대중적인 성공을 원하는 행사집행 부와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진기자는 가판대에 있는 신청인 부부의 딸과 그녀의 친구 모습을 촬

영했다고 알려졌다. 자녀의 친구가 그녀의 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관련 내용에 관해 이야기 나눌 때 신청인 부부의 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진기자는 딸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곧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어머니와도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졌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자리해 있었고, 사진기자는 아이의 건강 상태가 비밀이었다고 여길 정도의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인 부부는 사진기자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그들의 딸은 사진기자가 그 병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 함께 자리하지도 않았음을 밝혔다. 신청인 부부는 언론사의 사과와 기부제공행위는 문제의 기사가 불러온 고통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언론사는 지역 아동들이 개최한 훌륭한 계획을 지지하고자 이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정보의 게재는 중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가지며 사전에 적절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보도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사생활, 가정생활, 집, 건강 그리고 디지털 통신을 포함한 서신들에 대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보도에 관해 동의가 없었다면, 기사는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아이들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동의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나 그와 유사한 책임이 있는 성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아이들) 역시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신청인들의 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는 제3자 - 역시 아이 - 에 의해 제공되었다. 언론사는 신청인들의 딸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그들의 확고한 동

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아이의 병이 기밀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추측에 기초하여 보도하였다고 판단한다. 만약 기자가 아이의 부모들 중 한 사람에게 자녀의 이름과 병에 대해 기사화 하는 것에 관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아마도 이 문제는 바로잡혔을 것이다. 결국, 기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문제의 기사는 보도윤리강령 제3조와 제6조를 위반하여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신청인 부부의 불만신청을 인용한다.

[영국사례 3]

부정(不貞)혐의를 보도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 : Richard Rawson

매체명 : Heat

불만내용

Richard Rawson(‘Fazer’로도 알려짐)은 2012년 2월 11~17일자 <Heat 매거진>에 실린 “독점: Fazer, Tulisa를 속이고 나와 바람피워 / 우리가 입맞췄을 때 그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해” 제하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을 위반하였다며 사무변호사(Lewis Silkin)를 통해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문제의 기사는 한 여성이 2011년 11월경 나이트클럽에서 신청인을 만난 적이 있으며 - 둘이 함께 춤을 추고 입맞춤을 나눴다고 전한다 - 신청인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 기사였다. 당시 신청인에게는 대중에 공개된 연인이 있었다.

신청인은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춤을 춘 점은 인정하지만, 그녀와 입을 맞추거나 자신이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잡지사가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그의 대리

인에게 관련 이야기가 기사화 될 것이라고 한번정도 알려진 것 외에는 본인의 입장을 묻기 위해 대리인과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언급한 “부인(denial)”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에는 신청인이 여성과 입맞추는 모습이 없고 이는 함께 자리한 그의 스타일리스트의 증언 - 그는 누구와도 입을 맞추지 않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 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부인하고 있는) 입맞춤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표지에 언급된 “cheating”이란 표현은 (자신이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음을 암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잡지사는 해당 호를 출판하기 전에 그 여성이 신청인과 상호 합의하에 입맞춤을 나눴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그가 입 맞추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잡지사는 본 사안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신했었던 만큼 기사를 작성하는 와중에 신청인의 대리인과는 접촉하지 않았으며, 그의 대리인은 사전에 신청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잡지가 판매되기 전에 기사에 대해 알려줄 것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신청인과 한 여성이 함께 춤을 춘 당시에 발생한 일에 관해서 대립하는 두 주장을 조화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의 규정에 따라 잡지사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출판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도윤리경영 제1조는 언론사나 잡지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출판되는 기사의 당사자와 접촉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혐의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달려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진실성이 의심받거나 사안에 대한 다른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출판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잡지사는 신청인이 “바람을 폈다(cheated)”고 주장하며 문제의 기사를 표지에 강조되게 실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cheating”이라는 단어가 필연적으로 잠자리를 암시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부정(배우자나 애인에 대한 不貞)의 혐의는 심각한 사안에 해당한다. 기사는 신청인이 그의 여자친구에게 기만적이며 충실하지 못하다는 등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잡지사가 출판 전에 여성의 증언서를 받고, 기자의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청인의 입맞춤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제기된 혐의 종류와 신청인이 가진 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사가 문제의 기사를 실기 전에 신청인의 대리인과 접촉하지 않은 것은 보도윤리강령 제1조 즉,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출판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보도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서도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 불만신청은 인용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자신이 한 여성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기사에 실림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기에 합당한 장소 - 입구가 통제되는 VIP룸으로 그곳은 분명히 공공장소가 아니었다고 전한다 - 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임을 덧붙였다.

잡지사는 해당사진은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사람으로 붐비던 클럽의 댄스 플로어에서 촬영되었으며 그 날 저녁 제품 출시기념파티를 주최한 클럽측이 언론사관계자들이 무료로 참석하는 “Press Night”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므로 클럽의 VIP 공간에

입장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안전요원들이 그곳을 지키지도 않았기에 행사 참석자나 언론사관계자들은 그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알려졌다. 나아가 신청인의 행동 - 그가 현재까지 보여준 대중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면모 - 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분명한 공공의 이익을 지닌다고 항변했다. 신청인은 당시 그의 여자친구와 그날 이후로 몇 주 내에 아이를 갖으려고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그 개인의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적인 공간이란 “프라이버시를 기대하기에 합당한 공공장소 혹은 사유지”를 의미한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날 밤은 “Press Night” - 언론사관계자들이 나이트클럽에 입장했고 VIP 공간에도 출입했다 - 이었다는 점이다. 신청인 측이 제공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신청인의 스타일리스트는 “신청인이 다른 여성과 입맞춤을 하는 것은 바보같은 행동”이라고 발언하면서, 신청인은 “클럽 안 밖에 많은 기자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한다. 신청인은 많이 알려진 가수이며 유명한 공인이므로 이와 같은 행사에서 상당히 주목받기 쉽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진이 촬영될 당시에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호주사례]

고인의 범죄혐의를 보도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

사건번호 : 1539

신청인 : Ken Perry

매체명 : The Advertiser

개요

APC는 애들레이드(Adelaide) 지역의 2012년 2월 4일자 <The Advertiser>에 실린 “내 부인은 상습독살범이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불만을 검토했다. 기사는 Emily Perry가 사망한 지 6일 뒤에 보도되었는데, 1980년대 그녀가 자신의 2번째 남편을 독살하려고 한 데 이어 3번째 남편(Ken Perry) 역시 독살하고자 시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녀의 형제의 죽음을 비롯한 사실상의 배우자의 죽음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두 명의 사인은 모두 독극물로 드러났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시 사망과 관련된 증거물이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혐의와 관련된 그녀의 유죄선고는 고등법원에서 뒤집혔으며 이에 관해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문제의 기사는 불공정하고 균형을 잃어, 사생활과 고인의 가족 및 친구들의 감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으며, 특히 그녀가 죽은 지 몇일이 지나지 않아 기사화 되었음을 강조했다. 기사는 법원이 기각한 30년 전의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고인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들에 대한 고등법원의 평가 특히 재판 중 신문을 받은 병리학자가 후일 많은 사건들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알려진 점 등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인은 또한 고인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것과 더불어 살아생전에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다고 전했다.

언론사의 주장

언론사는 Emily Perry의 법정다툼은 커다란 공익의 문제이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 그것들에 관해 환기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유죄선고가 뒤집힌 사실은 후에 한층 상세히 설명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훨씬 전에도 기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이 고인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부인이 대한 강력한 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련 사건에 관한 공개된 자료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요약되어 있다. 신청인이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후에 언론사는 그에게 사과서신을 발송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 이유

위원회는 고인의 법정다툼이 지닌 특수성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특성을 고려하여 그녀의 남편과 가족, 지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었을 그녀의 죽음에 뒤이어 문제의 기사대로 해당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기사가 공정해야 하고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문제의 기사가 기꺼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무죄 증명 자료보다 고인에 대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정보와 혐의에 훨씬 더 강한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충분한 균형감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고인의 소송 및 그 후 많은 소송들에 관여한 병리학자의 행동에 관한 (권위 있는 출처에서 밝힌) 매우 심각한 의혹들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인의 2번째 남편에 대한 살인죄 기소가 취하된 것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요하다 여겨지는 정황에 대한 균형감의 부족을 근거로 신청인의 불만신청을 인용한다.

부록

위원회는 “Emily Perry, 잔인한 의심들에 의해 독살된 삶을 살다 죽다”라는 온라인 버전의 기사의 헤드라인이 충분한 균형감을 갖추었다고 언급했다. 이 온라인 기사에 관하여는 어떤 불만신청도 접수되지 않

았다.

가족의 한 친구인 Margaret Hallworth는 신청인과 유사한 취지에서 불만을 신청했다. 그녀와 신청인은 기자가 남긴 수많은 음성 메시지가 신청인의 슬픔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당시 상황 하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이 부적당한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뉴질랜드사례]

신문의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만평”은 사실보도가 아닌 견해에 속한다.

사건번호 : 2261

신청인 : Richard Hall

매체명 : The Dominion Post

개요

신청인은 2012년 5월 14일자 <The Dominion Post>에 실린 - 악명높은 나치강제수용소의 의사인 Jozef Mengele와 함께 사회개발부장관 Paula Bennet을 묘사하고 있는 - 만평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 불만신청은 인용되지 않았다.

Paula Bennet 장관은 여성 수혜자들과 그들의 십대 자녀들을 위해 정부가 무료의 장기 피임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논란이 번졌고 후에 정부는 강요된 불임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The Trace Hodgson Cartoon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The Dominion Post>에 게재하였다. 만평은 오피니언란에 실렸으며, 그곳은 통상적으로 <The Dominion Post>의 만화작가 (Tom Scott)에게 할당된 공간이었다.

만평은, Paula Bennet이 자신의 “새로운 상담가” Dr. Mengele을 소개한다는 말과 함께 해골이 선명

하게 새겨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림이었다. Dr. Mengele은 양손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칼과 톱을 든 채 나치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일종의 사회 개발 실험을 통한 예산 삭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화의 뒷 배경에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해로운 검은새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수혜자를 위한 거대한 계획”이라는 표지판 위에는 검은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신청인의 주장

Mr. Hall은 만평이 게재된 당일 <The Dominion Post>에 그의 불만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그는 “만평에 등장한 인물은 Paula Bennet이 아니며, 그녀가 추구하는 정책도 아니”라고 항의했다. 문제의 만평은 그녀 혹은 그녀가 펼치는 정책과 유사하다는 타당한 근거조차 없으며 그러한 흉측함은 과거에 수많은, 끔찍한 죽음을 불러온 Dr. Mengele에 의해 자행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만화에는 종종 과장법이 사용되지만 문제의 그림은 현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며, 혐오스럽고, 매우 공격적이라고 밝혔다.

5월 29일 신청인은 <The Dominion Post>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균형에 관한 평의회의 준칙을 근거로 장관이 추구하려는 정책과 Dr. Mengele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사건들의 비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Dr. Mengele은 나치강제수용소에서 수천명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관계된 사람이다.)

언론사의 주장

편집장(Bernatte Courtney)은 6월 5일 평의회에 답변서를 보냈고, 만평은 어떤 신문에서건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며 광범위한 사회적 내지 정치적 견해를 담고있다고 반박했다. 대다수의 칼럼은 신랄하게 비판적이고, 만화가의 견해를 표현한다고 주장하

면서 자신의 언론사의 만화는 분명히 “오피니언”이라고 구분되어진 섹션에 실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만평의 견해에 공감할 필요는 없으며, The Trace Hodgson Cartoon 역시 독자의 의견을 접수하는 편지함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Mr. Hall과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 만화로 인해 불쾌함을 느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자유로운 발언이란 날카로우며 친절하지 않을(unkind)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편집장 자신도 Hodgson의 만평이 어떤 이들에게는 날카로우며 친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평의회의 심리와 결정

언론사의 편집장이 주장한 바와 같이 평의회는 만평작가란, 그들의 작품이 오피니언이라 명명된 공간에 실리는 만큼 작가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들은 도발성을 비롯해 사상적인 선동, 즐거움, 불쾌하거나 심각한 공격성을 떨 수 있다. 칼럼니스트들 역시 유사한 자격을 갖는다. 평의회의 몇몇 위원들은 만화가 적어도 진실의 핵심에 기반하여 그려져야 한다고 보아 Paula Bennet의 정책을 Dr. Mengele의 과거 행적과 동등한 수준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위원들은 문제의 만화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수렴가능하며 이미 언급된 사실을 보여주는 재생산의 과정이었다고 보았다.

평의회의 준칙이 민주주의 하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더 이상 중요한 원칙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신청인의 불만을 살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자유재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최근의 Paul Homes 칼럼과 관련된 평의회 결정에서도 보았듯이 본질에 있어 너무나 과장되고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조를 넘어서는 비평이라면 그러한 불만신청은 인용될 것이다. 다만, 문제의 이 만평은

그 한계점을 넘지 않았다.

평의회는 준칙 4조가 사실적인 정보, 견해, 의견에 대한 명백한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만평은 견해에 속한다”고 본다.

신청인은 공정함과 균형을 요구하는 또 다른 평의회 준칙을 위반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The Dominion Post〉의 편집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조항은 뉴스기사에 적용되는 것이지 “오피니언”란에 게재되는 만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 번역 : 임미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법제관련문헌

- 구교태 (2012, 8. 31). 인터넷 토론 행위에 대한 정보 신뢰의 영향.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분과주최 ‘하계 콜로키움’ 발제문.
- 구교태 (2012, 9. 7). 정보기술기반 지역공론장 현황과 도전. 대구경북언론학회주최 ‘스마트혁명 시대의 지역공론장 활성화 전략’ 세미나 발제문.
- 권상희 · 이완수 (2012). 규제와 탈규제. 『방송통신 연구』, 통권 제79호, 9-36.
- 금현수 · 이화행 · 이정기 (2012). 지역 신문의 지속적 구독의도 및 유료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3호, 134-160.
- 김경모 · 신의경 (2012, 9. 14). 온라인 저널리즘시대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 반성과 전망. 한국언론학회주최 ‘민주주의와 갈등: 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모색하다’ 제3차 기획세미나 발제문.
- 김경희 (2012). 뉴스 소비의 변화와 뉴스의 진화. 『언론정보연구』, 제49권 제2호, 5-36.
- 김기태 (2012, 6. 26). 지역방송 프로그램 특성화를 통한 시청자 만족도 제고 방안. 충청언론학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최 ‘2012 지역방송 심의관련 토론회’ 발제문.
- 김덕모 · 신현호 (2012, 9. 5). 2012 대선에서 소셜 미디어와 지역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광주 전남언론학회주최 ‘소셜 미디어와 선거: 지역 언론과 여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발제문.
- 김덕모 · 강철수 (20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조례 추진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41-77.
- 김용찬 · 심홍진 · 김유정 · 신인영 · 손해영 (20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공유행위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3호, 28-50.
- 김용찬 · 손해영 · 심홍진 · 임지영 (2012). 뉴미디어 이용과 환경통제감 인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9권 제2호, 45-94.
- 김원제 (2012, 7. 4). 과학전문채널의 성공사례 분석 및 전략적 교훈 (NGC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과학보건환경위험커뮤니케이션분과주최 ‘미디어융합시대 과학미디어의 가능성과 전망’ 특별세미나 발제문.
- 김진국 · 김영환 (2012). 신문기업이 저널리즘의 정체성을 견지하며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9호, 162-179.
- 김희경 · 이재호 (2012). N-Screen 시대, 저작권 분쟁의 쟁점과 시각.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9호, 211-232.

- 민정식 (2012). 트위터(Twitter) 이용과 정치 참여.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274-303.
- 박선희 (2012). SNS 뉴스 소통. 『언론정보연구』, 제 49권 제2호, 37-73.
- 박은선 · 이광형 · 김찬석 (2012). 과학기술 실패 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 3호, 213-237.
- 박한우 · 허윤철 · 김지영 (2012. 9. 7). 소셜미디어 를 활용한 지역언론의 공공저널리즘 활용 현 황과 개선 방안. 대구경북언론학회주최 ‘스마 트혁명 시대의 지역공론장 활성화 전략’ 세미 나 발제문.
- 박홍원 (2012. 9. 14).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다원주 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한국언론학회주 최 ‘민주주의와 갈등: 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모색하다’ 제3차 기획세미나 발제문.
- 박희봉 (2012. 9. 21). 사회자본의 국가간 특성. 한국 언론학회 방송과뉴미디어분과주최 ‘국가별 특 성과 미디어 이용’ 세미나 발제문.
- 성동규 (2012. 8. 10).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공 방 안.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인터넷신문의 신 뢰, 문제와 대책’ 토론회 발제문.
- 송경재 (2012. 9. 21). 인터넷 문화형성의 메커니즘 국제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 방송과뉴미 디어분과주최 ‘국가별 특성과 미디어 이용, 세미 나 발제문.
- 송중현 (2012. 6. 26). 지역방송의 광고 · 협찬 내용 규제 개선 방안. 충청언론학회,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주최 ‘2012 지역방송 심의관련 토론회’ 발제문
- 신성호 (2012. 8. 21). 박종철 탐사보도와 정부의 언 론통제. 한국언론학회 <언론과 사회>연구회 주최 ‘여름 세미나’ 발제문.
- 심 훈 (2012. 8. 25). 한일 양국 언론의 미국 뉴스 비 교분석. 한국언론학회, 일본매스커뮤니케이 션학회주최 ‘2012년 제18회 한 · 일 국제심포 지엄 - 한 · 일 양국의 대미 보도’ 발제문.
- 양재규 (2012. 7). 법을 알고 기사쓰기 84 - 번역 전에 사건의 맥락 먼저 파악해야. 『신문과 방송』, 통 권 499호, 93-96.
- 양재규 (2012. 8). 법을 알고 기사쓰기 85 - 기자 VS 취재원 사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신문과 방송』, 통권 500호, 216-219.
- 양재규 (2012. 9). 법을 알고 기사쓰기 86 - ‘의명’ 과 ‘집단’ 명예훼손 안전망 아니다. 『신문과 방 송』, 통권 501호, 95-99.
- 유의선 (2012. 8. 28). 차기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제11회 철 우언론법상 기념 학술세미나 - 방송통신정책 의 법적 과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 발제문.
- 이기동 (2012. 9. 6). 지역 언론의 지자체 관련 칼럼 의 특성과 쟁점. 충청언론학회주최 ‘2012년 하 반기 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동훈 (2012. 9. 14). 온라인개인미디어와 디지털 공 론장의 공진화 성격과 전망. 한국언론학회주 최 ‘민주주의와 갈등: 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 모색하다' 제3차 기획세미나 발제문.
- 이민규 · 이예리 (2012). 국내 신문의 가축 전염병 위험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378-414.
 - 이봉현 (2012).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직업 규범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9호, 31-49.
 - 이승선 (2012, 9. 6). 지역 언론의 역할과 지자체의 언론소송 현황과 쟁점. 충청언론학회주최 '2012년 하반기 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인호 (2012, 8. 28). 이명박정부 방송통신정책의 현황과 평가 -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제11회 철우언론법상 기념 학술세미나 - 방송통신정책의 법적 과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 발제문.
 - 이재진 · 이정기 (2012). 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3호, 51-84.
 - 이제영 (2012, 9. 7). 지역채널 뉴스방송의 채널브랜드 형성과 과제. 강원언론학회주최 '2012년 가을 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향선 (2012). 인터넷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방송학보』, 제26권 제4호, 215-264.
 - 정낙원 (2012, 8. 31). 뉴스미디어 이용의 정치참여 효과에 대한 구조적 메커니즘 분석: 인지, 태도, 행동의 통합적 모델.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분과주최 '하계 콜로키움' 발제문.
 - 정인숙 (2012, 7. 4). 과학전문채널의 전망 및 발전 방안. 한국언론학회 과학보건환경위험커뮤니케이션분과주최 '미디어융합시대 과학미디어의 가능성과 전망' 특별세미나 발제문.
 - 조항제 (2012, 9. 14). 민주주의와 미디어: 언론의 권력화에서 미디어화로. 한국언론학회주최 '민주주의와 갈등: 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모색하다' 제3차 기획세미나 발제문.
 - 조화순 · 김정연 (2012).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과 참여의 커뮤니케이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9권 제2호, 95-130.
 - 주정민 (2012, 8. 28). 공영방송의 거버넌스개편방안 (사)미디어미래연구소주최 '차기정부 방송통신정책포럼2' 발제문.
 - 주정민 · 정승호 (2012, 9. 5). 선거에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광주전남언론학회주최 '소셜 미디어와 선거: 지역언론과 여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발제문.
 - 최민재 · 이홍천 · 김위근 (2012).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502-533.
 - 최영목 (2012). 리영희의 '언론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9호, 7-30.
 - 최진호 · 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개입.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534-571.
 - 한진만 · 홍성구 (2012, 9. 7). 유료방송 지역채널의 공익성과 지역방송의 역할. 강원언론학회주최 '2012년 가을 학술세미나' 발제문.

- 한진만 · 최현철 · 홍성구 (2012). 언론자유와 공정성 심의체계.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79호, 71-98.
- 홍경수 (2012. 8. 21). 공영방송사 제작체계 변화가 피디 전문직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언론과 사회〉연구회주최 ‘여름 세미나’ 발제문.